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유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05

제출년월일 : 2024. 2. 21.
발 의 자 : 김유숙 의원 등 9 명

1. 제안이유

- 최근 사회적 · 심리적 ·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으며, 집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안 제5조 ~ 안 제6조)
-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 및 실태조사 (안 제7조 ~ 안 제8조)
-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 (안 제9조)
- 포상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 | | |
|-------------|--------|
| 3. 제정조례안 | : 붙임 1 |
| 4. 관계법령 발췌서 | : 붙임 2 |
| 5. 예산수반사항 | : 붙임 3 |
| 6. 부서검토의견 | : 붙임 4 |
| 7. 조례안 예고결과 | : 의견없음 |

○ 조례안 예고 : 2024. 2. 15. ~ 2024. 2. 20.

【불임 1】 제정조례안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사회적 고립청년” (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6개월 이상 집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의 안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

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고립청년 발굴) 시장은 고립청년 발굴을 위해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립청년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
 2.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3. 고립청년 대상 발굴 사업
 4. 고립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
 5. 고립청년과 그 가족·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김유숙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65)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9-405
----------	-------

제안년월일 : 2024. 3. 11.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수정

□ 주요골자

- “사회적 고립청년”을 “고립·은둔 청년”으로 용어 정비
- 고립기간 6개월 이상 요건 삭제 (안 제7조)
-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안 제8조)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사회적 고립청년”을 “고립·은둔 청년”으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을 ““고립·은둔 청년”이란”으로, “6개월 이상 집”을 “집”으로 한다.

제3조 중 “고립청년이”를 “고립·은둔 청년이”로, “고립청년의”를 “고립·은둔 청년의”로 한다.

안 제4조 중 “고립청년”을 “고립·은둔 청년”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립청년을”을 “고립·은둔 청년을”로, “고립청년 지원”을 “고립·은둔 청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고립청년”을 각각 “고립·은둔 청년”으로 한다.

안 제6조 중 “고립청년”을 “고립·은둔 청년”으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 “(고립청년 발굴)”을 “(고립·은둔 청년 발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고립청년”을 “고립·은둔 청년”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고립청년”을 “고립·은둔 청년”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3년마다”로 한다.

안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고립청년”을 각각 “고립·은둔 청년”으로 한다.

안 제10조 중 “고립청년”을 “고립·은둔 청년”으로 한다.

안 제11조 중 “고립청년”을 “고립·은둔 청년”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u>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u>	<u>안산시 고립·온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사회적 고립청년</u>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사회적 고립청년</u>”(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u>6개월 이상 집</u>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p>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고립청년이</u>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u>고립청년의</u>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고립청년</u>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p>	<p>제1조(목적) ----- <u>고립·온둔 청년</u> -----</p> <p>-----.</p> <p>-----.</p> <p>-----.</p> <p>-----.</p> <p>제2조(정의) -----</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안과 같음) 2. “<u>고립·온둔 청년</u>”이란 ----- <p>-----.</p> <p>-----.</p> <p>-----.</p> <p>-----.</p> <p>-----.</p> <p>제3조(시장의 책무) -----</p> <p>----- <u>고립·온둔 청년이</u> -----</p> <p>-----.</p> <p><u>고립·온둔 청년의</u> -----</p> <p>-----.</p> <p>-----.</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고립·온둔 청년</u> -----</p> <p>-----.</p> <p>-----.</p>

개정안	수정안
<p>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u>고립청년을</u>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u>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u>(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고립청년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u> 2. <u>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u> 3. <u>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u> 4. <u>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u> 5. <u>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u> 6. 그 밖에 <u>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② (생략)</p> <p>제6조(시행계획)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u>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u>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7조(<u>고립청년 발굴</u>) 시장은 <u>고립청년 발굴</u>을 위해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u>고립청년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u>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5조(기본계획) ① ----- <u>고립·온둔 청년</u> <u>을</u> ----- ----- <u>고립·온둔 청년 지원</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고립·온둔 청년</u> ----- 2. <u>고립·온둔 청년</u> ----- 3. <u>고립·온둔 청년</u> ----- 4. <u>고립·온둔 청년</u> ----- 5. <u>고립·온둔 청년</u> ----- 6. ----- <u>고립·온둔 청년</u> ----- <p>② (원안과 같음)</p> <p>제6조(시행계획) ----- ----- <u>고립·온둔 청년</u> ----- -----.</p> <p>제7조(<u>고립·온둔 청년 발굴</u>) ----- ----- <u>고립·온둔 청년</u> ----- -----.</p> <p>제8조(실태조사) ① ----- <u>고립·온둔 청년</u> ----- ----- <u>위하여 3년마다</u> -----.</p> <p>② (원안과 같음)</p>

개정안	수정안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① ----- -----.
1. (생 략)	1. (원안과 같음)
2. <u>고립청년</u>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2. <u>고립·온둔 청년</u> -----
3. <u>고립청년</u> 대상 발굴 사업	3. <u>고립·온둔 청년</u> -----
4. <u>고립청년</u>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	4. <u>고립·온둔 청년</u> -----
5. <u>고립청년</u> 과 그 가족·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사업	5. <u>고립·온둔 청년</u> ----- -----
6. 그 밖에 <u>고립청년</u>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u>고립·온둔 청년</u> ----- -----
② (생 략)	② (원안과 같음)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u>고립청년</u>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u>고립·온둔 청년</u> ----- ----- -----.
제11조(포상) 시장은 <u>고립청년</u>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 <u>고립·온둔 청년</u> ----- -----.